

2013. 2. 4. 의결, 2013. 7. 1. 시행

23 방화범죄 양형기준

방화범죄의 양형기준은 현주건조물 등 방화(형법 제164조 제1항),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· 치사(형법 제164조 제2항), 공용건조물 등 방화(형법 제165조),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등 방화(형법 제166조 제1항), 타인 소유 일반물건방화(형법 제167조 제1항), 문화재 방화(문화재보호법 제94조), 채종림 등 방화(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), 타인 소유 산림 등 방화(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), 특정범죄가중법상 산림 방화(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2항, 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)의 죄를 저지른 성인(19세 이상)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방
화
범
죄

2013.
7. 1.
시행

※ 밑줄 표시된 법 조항은 양형기준 설정(수정) 후 개정되어 삭제되거나 변경된 조항으로서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, 현 양형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(세부 개정 내용은 부록 참조)

I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01 | 일반적 기준

| 유형 | 구분 | 감경 | 기본 | 기증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1 | 현주건조물 등 방화, 공용건조물 등 방화 | 1년6월 - 3년 | 2년 - 5년 | 4년 - 7년 |
| 2 | 일반건조물 등 방화 | 1년 - 2년 | 1년6월 - 3년 | 2년6월 - 5년 |
| 3 | 일반물건방화 | 6월 - 1년 | 10월 - 2년 | 1년6월 - 4년 |

| 구분 | | 감경요소 | 가중요소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-|
| 특별 양형 인자 | 행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●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●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●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●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|
| | 행위자 /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농아자 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● 자수 ●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동종 누범 |
| 일반 양형 인자 | 행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소극 가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계획적 범행 ●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(3유형은 제외) |
| | 행위자 /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●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● 진지한 반성 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 ●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(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) |



02 |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

| 유형 | 구분 | 감경 | 기본 | 가중 |
|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1 | 문화재 방화 | 2년6월 - 4년 | 3년 - 8년 | 6년 - 12년 |
| 2 | 산림 방화 | 3년 - 6년 | 5년 - 9년 | 8년 - 13년 |

| 구분 | | 감경요소 | 가중요소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---|
| 특별 양형 인자 | 행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침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●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●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(1유형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●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● 사회적·문화적·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●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●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|
| | 행위자 /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농아자 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 ● 자수 ●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동종 누범 |
| 일반 양형 인자 | 행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소극 가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계획적 범행 ●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|
| | 행위자 /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●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 ● 진지한 반성 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 ●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(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) |

방화 범죄

2013.
7. 1.
시 행

03 |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/치사

| 유형 | 구분 | 감경 | 기본 | 가중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1 |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| 2년6월 - 5년 | 4년 - 7년 | 6년 - 11년 |
| 2 |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(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) | 4년 - 9년 | 7년 - 13년 | 10년 - 17년 |
| 3 |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(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) | 9년 - 13년 | 12년 - 16년 | 15년 이상, 무기 이상 |

▷ 3유형에 해당할 경우,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종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.

| 구분 | 감경요소 | 기중요소 |
|----------------|---|--|
| 특별 양형 인자 | 행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● 경미한 상해(1유형)●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(2유형)● 미필적 살인의 고의(3유형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●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(후자는 1유형에 한함)● 잔혹한 범행수법●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●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●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|
| | 행위자 /기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농아자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● 자수● 처벌불원(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동종 누범 |
| 일반 양형 인자 | 행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소극 가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계획적 범행●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|
| | 행위자 /기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●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● 상당 금액 공탁●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● 진지한 반성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●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(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) |



[유형의 정의]

01 | 일반적 기준

가. 제1유형(현주건조물 등 방화, 공용건조물 등 방화)

-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(이하 같음).

| 구성요건 | 적용법조 |
|---|--------------|
| (현주, 현존)건조물, 기차, 전차, 자동차, 선박, 항공기, 광강) 방화죄를 범한 경우 | 형법 제164조 제1항 |
| (공용, 공익)건조물, 기차, 전차, 자동차, 선박, 항공기, 광강) 방화죄를 범한 경우 | 형법 제165조 |

나. 제2유형(일반건조물 등 방화)

| 구성요건 | 적용법조 |
|---|--------------|
| 일반(건조물, 기차, 전차, 자동차, 선박, 항공기, 광강)방화죄를 범한 경우 | 형법 제166조 제1항 |

다. 제3유형(일반물건방화)

| 구성요건 | 적용법조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일반물건방화죄를 범한 경우 | 형법 제167조 제1항 |

방
화
범
죄

2013.
7. 1.
시 행

02 |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

가. 제1유형(문화재 방화)

| 구성요건 | 적용법조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지정문화재, 가지정문화재 건조물 등 방화 | 문화재보호법 제94조 |

나. 제2유형(산림 방화)

| 구성요건 | 적용법조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채증림, 수형목, 시험림 방화 | 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 |
| 타인 소유 산림 등 방화 |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|
| 특정범죄가중법상 산림 방화 |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2항, 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 |

03 |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/치사

가. 제1유형(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)

| 구성요건 | 적용법조 |
|---|-----------------|
| (현주, 현존)건조물, 기차, 전차, 자동차, 선박, 항공기, 광강) 방화치상 |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|

나. 제2유형[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(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)]

| 구성요건 | 적용법조 |
|---|-----------------|
| (현주, 현존)건조물, 기차, 전차, 자동차, 선박, 항공기, 광강) 방화치사 |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|

다. 제3유형[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(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)]

| 구성요건 | 적용법조 |
|---|-----------------|
| (현주, 현존)건조물, 기차, 전차, 자동차, 선박, 항공기, 광강) 방화치사 |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|



[양형인자의 정의]

01 | 일반적 기준

가.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
(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 -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,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 -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된 자의 범행이나 부당한 대우가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
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나.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초기 진화로 실제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경우
 - 피해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
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다.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

- 손해액의 약 2/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라.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방화로 인해 인근 건물(다세대주택, 아파트 등)에 피해를 입힌 경우
 - 방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대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
 -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된 경우
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마.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-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
 - 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
 -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(무작위)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
 -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에 반대하는 입주자들의 주거나 사업장에 방화하는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실력 행사의 일환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
 - 종교적 이유로 타 종교시설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
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바. 소극 가담

-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사.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(제3유형은 제외)

- 다세대주택, 아파트, 상가, 주유소 등의 방화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.

02 |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

가.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(제1유형)

- 문화재보호법 제94조 각 호의 건조물이라는 인식이 없이 우연히 해당 건조물을 방화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.

나. 사회적 · 문화적 ·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

- 사회적 · 문화적 ·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고, 소실 후에는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방화로서,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

- 국보,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대한 방화
- 국립공원의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내 산림,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방화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03 |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/치사

가. 경미한 상해(제1유형)

-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,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,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.

나.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(제2유형)

-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,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.

다.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(제1유형)

- 치료기간이 약 4주 ~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,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,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라. 진혹한 범행수법

-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.

마.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

-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,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,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.

바. 처벌불원(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)

-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, 유족이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.
-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.

[양형인자의 평가원칙]

01 |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-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 -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 한다. 다만,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.
 -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-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02 | 선고형의 결정방법

-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.



[공통원칙]

01 |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

-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 할 수 있다.
-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02 |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-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방
화
법
죄

2013.
7. 1.
시 행

03 |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

-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[다수범죄 처리기준]

01 | 적용범위

-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02 | 기본범죄 결정

-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한다.

03 | 처리방법

-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.
 -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$1/2$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-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$1/2$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$1/3$ 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-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


Ⅱ. 집행유예 기준

| 구분 | 부정적 | 긍정적 |
|----------------|---|--|
| 주요 참작 사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한 경우 ●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● 사회적·문화적·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●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● 동종 전과(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) ● 중한 상해 ●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●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● 자수 ●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● 경미한 상해 ● 형사처벌 전력 없음 |
| 일반 참작 사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●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●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●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● 진지한 반성 없음 ● 계획적인 범행 ●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●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● 피해 회복 노력 없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●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●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(다만, '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'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) ● 우발적인 범행 ● 진지한 반성 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● 피고인이 고령 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●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●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고통을 수반 |

방
화
범
죄2013.
7. 1.
시 행

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]

-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
 -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.
- 전과의 기간 계산
 -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,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.

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]

-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 - ① 주요공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공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 -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공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 -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(공정)사유와 일반공정(부정)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공정(부정)사유와 주요부정(공정)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